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01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용혜인 · 한창민 · 서왕진
윤종오 · 강경숙 · 김준형
정춘생 · 전종덕 · 김재원
차규근 · 이해민 · 백선희
황운하 · 손 솔 · 신장식
김선민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음. 또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하는 최소 득표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수와 높은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이 할당되는 최소 득표율 기준은 과도한 사표(死票)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괴리를 야기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따라 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봉쇄조항)을 100분의 3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안 제22조제4항).
- 나.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안 제23조제3항).
- 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 배분 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함(안 제190조의2제1항 및 제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본문 중 “100分の 10으로”를 “100분의 30으로”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100분의 10으로”를 “100분의 30으로”로 한다.

제190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100분의 5”를 각각 “100분의 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 ① ~ ③ (생략) ④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地域區市·道議員定數의 <u>100분의 10</u> 으로 한다. 이 경우 端數는 1로 본다. 다만, 算定된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가 3人 미만인 때에는 3人으로 한다.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100분의 30</u> 으로 ----. ---- -----. ----- ----- -----.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② (생략)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u>100분의 10</u> 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100분의 30</u> 으로 ---. ---- -----.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u>100분의 5</u>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 ----- <u>100</u> <u>분의 3</u> ----- ----- -----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
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
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
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
여 산출한다.

② (생략)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② (현행과 같음)

③

100분의 3

④ (현행과 같음)